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0-08

수 원 지 방 법 원

제 3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3구합77123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 취소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장◯◯
피 고	◯◯시장
변 론 종 결	2024. 6. 13.
판 결 선 고	2024. 7. 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5. 3. 원고에게 한 취득세 39,881,690원, 지방세 3,988,17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0-08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2. 13. 주식회사 B로부터 C일반산업단지 내에 있는 ○○시 D 공장용지 2,842.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매매계약을 승계받았다. 원고는 2018. 3. 5.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8. 3. 5.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 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8조 제4항에 따라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는 이유로 피고에게 취득세 등 감면을 신청하여 75%를 감면받아 23,264,29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21년 3월경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겠다고 통지하였다. 이에 원고는 2021. 4. 16. 기존에 감면받은 취득세 39,881,690원, 지방교육세 3,988,170원 합계 43,869,860원을 피고에게 신고·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22. 4. 8. 피고에게 위와 같이 납부한 43,869,860원이 환급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22. 5. 3.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22. 7.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18호증, 을 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취득 후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0-08

다하였으나 해수 담수화 기술 개발과 설계, 특허출원 등에 시간이 걸려 유예기간 내에 완공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3.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신축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나(제78조 제4항 제1호 가목, 제2호 가목),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같은 조 제5항 제1호)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한다. 위 규정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란,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내부적으로 토지를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했는데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위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뜻한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두9978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갑 제7, 9, 10, 11, 17호증, 갑 제12호증의 1 내지 3, 갑 제13호증의 1, 을 제3,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해수 담수화 기술을 개발 중인 회사로서, 새로운 방식의 기술을 실험하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0-08

기 위한 '실증 플랜트'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분양받았다. 원고는 2018. 3. 2. 매매대금을 전부 납부하였다.

2) 원고는 2020년 11월경 이 사건 토지에 건축될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의 규모에 관하여 산업단지 입주계약을 변경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020. 11. 10. 경계측량을, 2020. 11. 12. 지반조사를 실시하였다.

3) 원고는 2021. 1. 20. 이 사건 공장 건축허가를 받고, 2021. 3. 3. 건축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같은 날 시공사를 통하여 '2021. 3. 8. 착공하고 2021. 7. 30. 준공하겠다'는 내용의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위 착공신고는 2021. 3. 19. 수리되었다.

4) 피고 소속 공무원은 2021. 3. 5. 이 사건 토지 방문조사결과 이 사건 공장이 미착공 상태임을 확인하였고, 2021. 4. 2. 다시 방문하여 일부 면적에 대해 파일공사 작업 중이며 터파기 공사는 진행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5) 원고는 2021. 9. 7. 이 사건 공장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구체적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2018. 3. 2.부터 3년 내에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공장을 완공하여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원고는 2018. 3. 2. 매매대금을 전부 납부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취득한 이후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이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할 만한 행정관청의 사용 금지·제한 등 외부적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0-08

인 사유는 존재하지 않았다.

나) 원고가 이 사건 공장의 건축허가를 받은 시점은 2021. 1. 20.이고 원고가 이 사건 공장 설계를 위하여 실질적 준비를 시작했다고 확인되는 시점은 2020년 11월경이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취득 이후 약 2년 8개월간 이 사건 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장은 새로운 방식의 해수 담수화 기술의 '실증 플랜트'이기 때문에 그 설계에 장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이 사건 공장의 특성과 그에 따른 예상 소요기간은 이 사건 토지 취득 당시부터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원고가 이러한 사정을 예측하고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상 유예기간 내에 이 사건 공장을 완공하지 못한 것은 원고의 주관적 사유에 불과하다.

라) 원고는 유예기간 경과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21. 9. 7. 이 사건 공장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아 현재 이 사건 토지를 해당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일정한 기간을 유예기간으로 두고 그 안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여 해당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만 취득세를 면제하고자 한 관련 법령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 또한 현재 이 사건 토지가 해당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유예기간 내에 이 사건 공장을 완공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0-08

재판장 판사 김○○

판사 김○○

판사 정○○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0-08

(별지)

관련 법령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 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60)를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대상 지역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 경감 내용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신축 또는 증축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이 경우 공장용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대수선(「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 가목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75를 경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0-08

감)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⑧ 제4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같은 항 제2호나목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끝.